|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 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 등기 관리방법>,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규정> 등** **규정에 대한 결정**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3호《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 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 등기 관리방법>,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규정> 등 규정에 대한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사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장 장마오2014년 2월 20일국무원이 비준한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 회사법 개정 결정에 근거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 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 등기 관리방법>,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1) 제14조 1항 제(7)호를 “규정에 부합되는 액수와 경영범위에 어울리는 등록자금이 있을 것. 국가가 기업 등록자본 액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수정한다.(2) 제32조 6항을 삭제(3) 제36조 1항의 “개설조건 심사”를 삭제(4) 제53조 (2)호의 “아울러 관련 등기사항과 개설조건을 심사”를 삭제하고 제(5)호를 삭제(5) 제9장 표제를 “공시 및 허가증 관리”로 수정(6) 제54조를 “등기주관기관은 기업법인등기, 등록정보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로 수정(7) 제55조를 “기업법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등기주관기관에 직전연도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연도보고의 공시 내용 및 감독검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로 수정(8) 제56조 2항을 삭제하고 “국가는 전자 영업허가증 사용을 추진한다. 전자 영업허가증과 페이퍼 영업허가증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의 내용을 추가하여 2항으로 한다. (9) 제59조 (3)항을 “기업이 규정에 따라 연도보고서를 제출, 공시했는 가를 감독한다.”로 수정, (10)호를 삭제.2.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 관리규정(1) 제7장 표제를 “연도보고서 공시 및 영업집조 관리”로 수정(2) 제47조를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등기기관에 직전 연도의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로 수정(3) 제57조, 제58조를 삭제.　　3. 개인독자기업 등기 관리방법(1) 제6장 주제를 “공시 및 영업집조 관리”로 수정(2) “등기기관은 개인독자기업 등기, 등록정보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개한다.”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29조로 한다. (3) 제29조를 제30조로 변경하고, 내용은 “개인독자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등기기관에 직전연도의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연도보고서 공개내용과 감독검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로 한다.(4) 제30조, 40조를 삭제.4. 개인공상업자 등기관리방법(1) 제23조를 “개인공상업자는 매년 1년 1월부터 6월 30일 사이에 등기기관에서 직전연도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그 연도보고서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인공상업자 연도보고, 공시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로 수정(2) 제33조 (2)호를 삭제(3) 제38조를 삭제.그 밖에 상기 규장의 조항순서와 일부 문자에 대해 상응하게 조정 및 수정하였다.이 결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 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 등기 관리방법>,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규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표한다.　　　　 |  |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外商投资合伙企业登记管理规定》、《个人独资企业登记管理办法》、《个体工商户登记管理办法》等规章的决定**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63号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外商投资合伙企业登记管理规定〉、〈个人独资企业登记管理办法〉、〈个体工商户登记管理办法〉等规章的决定》已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3月1日起施行。　　 局长 张茅　　 2014年2月20日　　为贯彻实施国务院批准的《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方案》，根据2013年12月28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通过的修改公司法的决定，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决定对《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外商投资合伙企业登记管理规定》、《个人独资企业登记管理办法》、《个体工商户登记管理办法》作如下修改：　　一、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　　（一）将第十四条第一款第（七）项修改为：“有符合规定数额并与经营范围相适应的注册资金，国家对企业注册资金数额有专项规定的按规定执行”。　　（二）删去第三十二条第六款。　　（三）删去第三十六条第一款中的“核实开办条件”。　　（四）删去第五十三条第（二）项中的“并核实有关登记事项和开办条件”。删去第（五）项。　　（五）将第九章标题修改为：“公示和证照管理”。　　（六）将第五十四条修改为：“登记主管机关应当将企业法人登记、备案信息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七）将第五十五条修改为：“企业法人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登记主管机关报送上一年度年度报告，并向社会公示。　　年度报告公示的内容及监督检查按照国务院的规定执行。”　　（八）删去第五十六条第二款，增加一款作为第二款：“国家推行电子营业执照。电子营业执照与纸质营业执照具有同等法律效力。”　　（九）将第五十九条第（三）项修改为：“监督企业是否按照规定报送、公示年度报告”。删去第（十）项。　　二、外商投资合伙企业登记管理规定　　（一）将第七章标题修改为：“年度报告公示和证照管理”。　　（二）将第四十七条修改为：“外商投资合伙企业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企业登记机关报送上一年度年度报告，并向社会公示。”　　（三）删去第五十七条、第五十八条。　　三、个人独资企业登记管理办法　　（一）将第六章标题修改为“公示和证照管理”。　　（二）增加一条作为第二十九条：“登记机关应当将个人独资企业登记、备案信息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三）将第二十九条修改为第三十条：“个人独资企业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登记机关报送上一年度年度报告，并向社会公示。　　年度报告公示的内容和监督检查按照国务院的规定执行。”（四）删去第三十条、第四十条。　　四、个体工商户登记管理办法　　（一）将第二十三条修改为：“个体工商户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向登记机关报送上一年度年度报告，并对其年度报告的真实性、合法性负责。　　个体工商户年度报告、公示办法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另行制定。”　　（二）删去第三十三条第（二）项。（三）删去第三十八条。　　此外，对上述规章的条文顺序和部分文字做了相应调整和修改。　　本决定自2014年3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外商投资合伙企业登记管理规定》、《个人独资企业登记管理办法》、《个体工商户登记管理办法》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重新公布。　　 |